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금감원, 퇴직연금사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

- '08.11월말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5조 4,463억원으로 전년(2조 864억원)대비 161%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.
 - 퇴직연금 초기시장 선점을 위해 퇴직연금사업자간의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, 이로 인해 금융권역별 적립금 비중은 급격히 변동하고 있음.
 - 특히, 2010년까지 퇴직보험·신탁이 퇴직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간의 계약유치 경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.
- 이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출 등을 조건으로 한 퇴직연금 계약체결 강요행위나 해당 기업 제품 구입 등 부당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될 우려가 커지고 있음.
 - 금융감독원은 오는 2월 2일부터 퇴직연금사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'퇴직연금 종합안내' 홈페이지에 '퇴직연금 불건전영업 신고센터'를 신설하여 운영할 예정임.
 - 퇴직연금 가입자 등이 퇴직연금사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발견하여 신고센터에 제보할 경우 금융감독원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관련 법규에 따라 적의 조치할 예정임.
- 금융감독원은 금번 '퇴직연금 불건전영업 신고센터'의 설치·운영을 계기로 퇴직연금사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철저히 근절하고자 함.
 - 이는 퇴직연금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,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율적인 노력을 통해 퇴직연금시장이 건전하게 발전될 것으로 기대함.

(퇴직연금 불건전영업 신고센터 신설,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연금실 연금팀, 1/22)